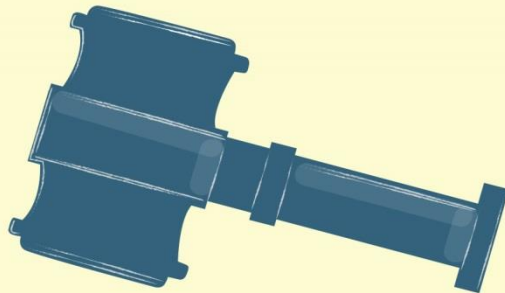


시민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30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흥사단

자료집을 펴내며

2016년 9월 28일은 대한민국에 청렴의 역사를 새로 쓰는 날입니다. 공직사회에서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행해지던 청탁이 청탁을 하는 사람이나 들어주는 사람이 모두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일명 김영란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그간 형법으로도 대가성이 없다고 처벌할 수 없던 금전과 선물의 수수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법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청탁문화와 접대문화는 공정하지 못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풍양속 또는 사회상규라는 명목으로 만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근절할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에 흥사단은 시민이 김영란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실천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핵심적인 사항을 3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김영란법을 이해하고 솔선수범함으로써 정의롭고 행복한 공동체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2016. 8.
흥사단



Q1

김영란법은 한마디로 어떤 법인가?

A

우리 사회에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각양각종의 청탁이 일상화되어 있다. 인·허가 청탁을 비롯하여 취직·진급 청탁, 심지어 군대에서 부대 배속, 대학병원에서의 입원과 수술 등등. 그리고 청탁의 뒤에는 금품의 수수가 자리잡고 있다. 그 결과 소위 백과 돈이 많은 사람은 이득을 취하며 편하게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차별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 불공정한 사회의 단면이다. 이러한 관행을 적어도 공직사회에서만큼은 획기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법이 일명 김영란법이다. 공직자가 직무를 올바르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청탁과 금품을 차단하고자 하는 법이다.

Q2

그런데 왜 김영란법이라고 하는가?

A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일반 국민이 법 명칭이 길어서 부르기 불편하니까 언론에서 이 법을 2012년 2월에 처음 제안한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의 이름을 빌려 그렇게 호칭하기 시작하였다. 이 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데에는 상당히 효과는 있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탁금지법」으로 약칭하고 있다.

Q3

당시 청탁금지법을 제정할만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A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는 2015년도에 100점 만점 기준으로 56점(전세계 168개국 중에서 37위, OECD 34개국 중에서 27위)이다. 2008년에 10점 만점에 5.6점을 정점으로 계속 후퇴 내지는 답보상태에 있다. 처음 입법이 제기되던 2011년도만 해도 부산저축은행 비리, 스폰서 및 벤츠검사 사건 등 크고 작은 부패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그러나 법의 심판은 거액의 뇌물이 오갔음에도 대가성이 없다고 법망을 피해가는 것이 일상이었다. 이에 당시 정부는 공정사회의 구현과 부패한 국가로의 오명을 씻어 세계 신인도를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이 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Q4

꺾적꺾적한 부패는 모두 고위 공직자의 행위인데, 굳이 청탁금지법을 제정하여 대부분 하위직 공직자를 부패한 집단으로 매도할 이 유가 있는가?

A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은 맞다. 그러나 부패의 씨앗인 청탁과 접대의 문화를 근절하는데 윗 물과 아랫물을 가릴 필요는 없다. 이 법은 부패행위 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므로 법이 시행되면 고위 공직 자들이 강력한 처벌이 무서워서라도 솔선수범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선도해 갈 것이다.

아울러 선량한 공직자 등이 이 법을 근거로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를 거절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는 민간사회에도 영향을 주어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 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Q5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어디인가?

A

국회,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을 비롯해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망라한다. 그 밖에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즉 공직유관단체,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언론사도 포함한다. 이들 기관의 종사자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적용을 받는다.

Q6

처음에는 공직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나?

A

입법예고 당시에는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래서 법률 명칭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었다. 그러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사립학교와 언론사를 포함함으로써 대상자는 공직자가 아닌 「공직자 등」으로 바뀌었다. 이제 과거는 잊고 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모두 이 법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부패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Q7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민간영역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며 헌법소원을 제출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가?

A

7월 28일, 9명의 재판관 중에서 7명이 합헌, 2명이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참고적으로 위헌으로 결정되면 관련 조항은 국회에서 삭제되어야 하는데 그럴 일은 없게 되었다. 위헌이 되려면 6명이 위헌으로 판정을 해야 하는데 이번 결과를 보면 헌법재판관들이 압도적으로 이 법에 언론사와 사립학교가 포함한 것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결정문을 보면 “언론과 교육부문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가 커서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이 요구 된다”고 하였다. 한국갤럽 조사의 결과를 보면 국민의 59%는 이들 기관이 포함된 것을 잘된 일이라고 응답하였다.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22%에 지나지 않았다. 국공립학교는 포함하는데 사립학교를 제외하거나, KBS는 포함하는데 MBC와 SBS를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Q8

공직자 말고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A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인도 적용 대상자이다. 각종 정부와 각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인,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거나 심의·평가하는 민간인도 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 배우자도 적용을 받는다. 일부에서는 배우자가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연좌제이라며 헌법소원까지 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위해서는 가족을 통한 우회적 뇌물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직자 본인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알고도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해 공직자만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연좌제는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Q9

항간에 국회의원은 빠져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A

법에는 적용대상기관에 국회가 들어가 있는데, 적용 대상자에는 국회의원의 용어가 없어서 나온 이야기이다. 법에서는 적용대상자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라 하였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다. 정확히 말하면 국회의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 즉 국회의원이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였기 때문에서 오는 오해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익적인 목적으로 고충민원을 전달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면 이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Q10

언론사와 사립학교가 민간영역이면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역시 공공성이 강한 법무법인, 금융기관, 병원, 시민단체도 포함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A

자본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해 가려면 소수의 가진 자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에 의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떠나서 모든 부문이 공공성을 강화해 갈 때만이 사회는 정의롭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흥사단은 위의 그런 주장에 동의한다. 우리가 공익을 위한 시민활동을 하면서 특정 개인이나 특정 기관의 청탁과 금품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A

그런데 아직 법이 시행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법이 시행된 후에 적절한 시기를 정해 적용대상에 시민단체가 포함하는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내려고 한다.

그런 점에서 흥사단은 위의 그런 주장에 동의한다. 우리가 공익을 위한 시민활동을 하면서 특정 개인이나 특정 기관의 청탁과 금품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아직 법이 시행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법이 시행된 후에 적절한 시기를 정해 적용대상에 시민단체가 포함하는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내려고 한다.

Q11 부정청탁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A

법률에서 세상사 모든 행위를 규정화할 수는 없다. 법 조항에서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는 것이 법치국가의 순리이다. 그래도 이 법에서는 부정청탁의 행위들을 열거하고 있다.

예를 하나 들면, 제5조 1항 1호에서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이다. 이 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였는데, 재판관 전원은 합헌이라고 하였다.

Q12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를 부정청탁이라고 할 수 있는가?

A

한마디로 모든 직무는 법령(조례·규칙을 포함)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내부의 상사와 동료 등, 외부의 지인들에 의한 청탁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어 왔다. 지금까지의 오랜 관행으로 보아서는 하루아침에 근절되기란 쉽지 않다. 그래도 공정한 사회를 이루려면 청탁에 구애받지 말고 직무가 처리되어야 한다.

이 법에서는 공직사회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직무들을 14가지로 구분하여 제5조 1항에서 나열하고 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의 직무
2. 인가·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 강제금, 범칙금, 징계의 직무
3. 채용·승진·전보의 직무
4. 심의·의결·조정, 시험·선발의 직무
5.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탈락의 직무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의 직무
7. 계약의 선정 또는 탈락의 직무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배정·지원의 직무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직무
10. 입학·성적·수행평가의 직무
11.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의 직무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의 직무
13.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직무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의 직무

Q13

위와 관련해서 부정청탁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가?

A

제5조 2항에서 네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1호는 법령이나 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하거나 건의하는 행위, 2호는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3호는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정당, 시민단체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4호에 직무를 법정기한에 처리를 요구하거나 진행상황·조치결과를 확인·문의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흥사단의 시민사회 활동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이 조항을 계기로 더욱 시민들의 고충민원과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함이 필요하다.

Q14 부정청탁을 하면 누가 처벌을 받게 되는가?

A

부정청탁을 들어주는 사람과 동시에 부정청탁을 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 하는 경우와 간접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인허가 업무를 예로 들면, 직접 청탁하는 경우라 함은 인허가 신청자가 인허가를 내주는 공직자에게 인허가 기준에 미흡하지만 청탁을 하며 인허가를 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은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재(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직자는 법령을 위반하여 인허가를 내주었으므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A

간접으로 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위 사례에서 신청자가 지인을 통해 직무수행자인 공직자에게 사실상 불법의 인허가 취득을 청탁하는 것이다. 지인에는 일반인과 공직자가 있다. 지인이 일반인이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인이 공직자이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신청자가 직접 청탁한 것이 아니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중간에서 청탁을 알선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또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도 자칫하면 패가망신하므로 아무리 상사의 지시이더라도, 절친한 친구의 청탁이더라도 불법의 청탁을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법은 공직자가 공정하게 법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할 것이다.

Q15

금품 수수를 하면 처벌한다고 하는데 금액 기준은 얼마인가?

A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한 해에 300만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그렇다고 100만 원 이하를 받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100만 원 이하라도 받으면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이다.

Q16

금품을 주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 그래도 처벌을 받는가?

A

이 법의 최대 특징은 대가성이 없어도 금품 수수를 하면 처벌을 받는 것이다. 그동안 형법상의 뇌물죄에서는 대가성이 입증되어야지만 처벌을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폰서 검사와 벤츠 검사의 사건인데, 이들 비리검사에게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무죄 선고가 내려져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Q17

동창회가 끝나고 2차 모임에서 돈 많은 친구가 공직자인 친구에게 30만 원 어치의 술을 샀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공직자인 친구에게 7만 원 짜리 선물도 사주었다. 이 경우 두 사람 모두 처벌을 받는가?

A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행위를 직무와 관련하여 규율하는 법이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이 없고, 100만 원 이하이면 제재대상에서 제외이다. 그러나 민간 기업, 가족, 친구, 지인들끼리의 금품 수수는 금품의 가액이나 종류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Q18

금품이라 하면 무엇을 말하는가?

A

이 법에서 금품이란 제2조 3호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재산적 이익·편의 제공·경제적 이익 모두를 말한다. 재산적 이익이라 함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이다. 편의 제공은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이고, 경제적 이익은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밖의 유형·무형의 것을 모두 포함한다.

여기서 금품 수수란 함은 공직자가 금품을 받은 것 뿐만 아니라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한 것도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공직자나 그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Q19

그렇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이 오갈 수 있지 않는가?

A

그래서 시행령에서는 음식물 접대의 경우에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까지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행동강령이 2003년에 제정된 이후 공직사회에서 준수해오던 3·3·5만원을 물가 상승을 감안하고, 한편으로 국민 여론 조사를 통해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는 미국의 경우 음식물 접대의 경우 20불인 점을 들어 시행령이 오히려 부패를 조장하고 있다고 반대 논평을 낸 바 있다.

Q20

소액의 금품, 예를 들면 3만원 이하의 식사와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언제라도 받는 것이 관찮은가?

A

그렇지는 않다.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일체의 금품을 받아서 안 된다. 요구해서도 안 되고, 약속해서도 안 된다. 조사대상자로부터, 민원인으로부터, 학부모로부터는 금액에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즉 이런 경우에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도 받는다.

Q21

금품 수수의 예외 사항이 또 있는가?

A

여러 종류가 있다. 몇 가지만을 열거하면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가 제공하는 금품,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단체에서 기준에 따라 주는 금품, 공식적인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기념품과 홍보용품 등이다.

Q22

수수 금지의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수수 금지의 금품이란 1회 100만원 초과 금품, 1회 100만 원 이하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 음식물·경조사비·선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상의 금품이다. 이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누가 주었는지 모를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어기면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과 함께 금품의 몰수를, 1회 100만 원 이하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이나 음식물·경조사비·선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상의 금품의 경우에는 금품 가액에 2배 이상 5배 이하의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Q23

시행령에서 정한 가액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매출이 반 토막이 나고, 결과적으로 경제 위축을 가져온다고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A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에서 선물의 매출 손실은 2조원(음식점업은 8조 5천억원)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대해 투명사회운동본부의 입장은 공무원행동강령에서 정한 3·3·5만원의 기준이 언론기관을 제외하고는 엄격히 준수되어 온 점을 볼 때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풍선효과가 나타나 고급 음식점 대신에 서민 음식점이, 고가의 선물 대신에 중저가의 선물의 매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건전성으로 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적정 가액 기준 판단 및 경제효과 분석’에서 선물의 경우 감소폭은 최소 0.0052%에서 최대 0.86%, 화훼산업은 충격이 없을 것으로 보았다, 더구나 경제에 주는 긍정적 효과로 기업의 경영효율화 증대, 산업 전반에 건전한 경쟁구도 확립,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가져와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Q24

외부강의 사례금도 제한을 받는가?

A

공직자가 직무관련 단체로부터 받는 고액의 사례금은 일종의 보험성 뇌물로 악용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저해 요인이었다. 그래서 금액을 제한하였고, 외부 강의를 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 또는 외부강의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외부강의 사례금은 기관과 직급에 따라 다르다. 1시간 기준으로 공무원은 20만원에서 50만 원까지, 공공기관은 20만원에서 40만 원까지이다. 1시간을 초과하면 1/2 추가할 수 있다. 언론기관과 사립학교 종사자는 1시간 당 100만 원까지이다. 이들 금액에는 원고료 등 일체를 포함한다. 다만, 실비 교통비는 제외한다.

Q25

이 법과 관련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가?

A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별도로 이 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법 적용 대상기관은 청탁방지담당관을 두어 이 법과 관련해 총괄토록 하여야 한다.

Q26

이 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 즉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서 신고토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가?

A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소속기관이나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면 된다. 신고자 보호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및 신분보호 조치를 취해 준다. 당연히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은 금지되고, 신고자가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우선적 고려를 해주어야 한다.

Q27

이 경우 포상금과 보상금도 있는가?

A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품 수수의 경우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금액의 30%(최고 5억 원), 기타의 경우에는 최고 2억 원이다.

직접적으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 원이다.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에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Q28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하나?

A

부칙을 보면 공포 후 1년 6개월 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 3월 27일 법률 제13278호로 공포되었으니 시행일은 2016년 9월 28일이다.

Q29

이 법에 보완할 점은 없는가?

A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가 별도 법으로 입법되어야 한다. 원래 이 법이 출발할 때에는 세 가닥이었다. 부정청탁 금지, 금품 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가 그것이다. 그런데 국회가 법률 검토의 시간 제약으로 이해충돌 방지를 제외한 채 앞의 두 가지만 포함시키고 법명을 바꿔 통과시켰다. 이해충돌 방지를 쉽게 설명하면 국회의원이 가족을 채용하거나 친인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쪽짜리 김영란법이라는 말도 생겼다. 부패를 제대로 근절하려면 반드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Q30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정착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A

청탁문화와 접대문화를 근절하여 청렴문화를 이루어 공직자의 직무가 공명정대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흥사단은 청탁금지법의 입법과정에서 시민단체에서 중심의 역할을 담당한 만큼,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에 청탁문화와 접대문화를 근절하는 범 시민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 사회는 보다 정의롭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